

1. 신청서류

①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

가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① 국내 발급시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- ② 해외 발급시 : 외국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류 및 문서인증서류, 한국어 번역본 및 번역인증 서류 첨부

나.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사망자의 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 및 문서인증서류, 한국어 번역본 및 번역인증 서류 첨부

다.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① 사망자 : 국내 금융거래시 사용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[여권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 사실증명), 국내거소신고증(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)] 등
- ② 상속인 : 여권,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

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
가.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(상속인 신분 확인 서류는 사본제출 가능)

나. (내국인 상속인) ① 위임장(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), ②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③ 대리인의 신분증

다. (외국인 상속인) ① 해외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및 문서인증 서류, 한국어 번역본 및 번역인증 서류, ②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위임장 양식은 우리 원 홈페이지 등재 양식을 참고

2. 신청서류의 문서인증 및 한국어 번역인증 방법

① 문서인증방법

- ◆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아포스티유 확인과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운용
- ※ 아포스티유 대상문서는 정부기관 발행 문서 및 공증을 받은 비정부기관 발행 문서

가. 아포스티유 확인[미국·중국·일본 등 아포스티유 가입 128개국]

- (대상) 외국에서 발행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관련 서류
- (인증) 외국정부(외교당국 등)의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증명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음
- *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, 위치 등 확인 가능

나. 한국공관의 영사확인(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)

- (대상) 외국에서 발행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관련 서류
- (인증) 신청서류에 대해 먼저 외국정부(외교당국)의 확인을 받은 후 현지주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음

② 한국어 번역인증방법

가.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(세가지 방법 중 택일)

- ① 신청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현지 공증인의 번역인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
- ② 신청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는 방법
- ③ 신청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국내 공증인 등의 번역인증을 받는 방법

나.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(두가지 방법 중 택일)

- ① 영사확인시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는 방법
- ② 영사확인 후 국내 공증인 등의 번역인증을 받는 방법

※ 재외동포청 문의처 (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 관련)
☎ 02-6747-0404 (<http://oka.go.kr>) 참조